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1. 자격증명시험

자격증명의 종류	면제 대상	일부면제 범위
가. 운송용 조종사	1)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나. 사업용 조종사	1)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자가용 조종사	1)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항공기 관사	1)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실무경력이 3 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 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항공교 통관제 사	1)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 관제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바. 항공정 비사	1) 해당 종류 또는 정비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종류 또는 정비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운항관 리사	1) 5년 이상 운항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 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과시험 중 항공법규만 실시
아. 경량항 공기조 종사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경량항공 기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정심사

자격증명의 종류	면제 대상	일부면제 범위
----------	-------	------------

조종사	종류추가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등급추가	해당 등급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형식추가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훈련비행시간 제외)	
항공 정비사	종류 추가	해당 항공기 종류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정비분야 추가	해당 정비분야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